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백혜련・이정문・김영진

임호선 · 민병덕 · 한민수

김한규 • 윤준병 • 서영석

염태영 · 김준혁 · 이수진

강준현 • 윤종군 • 정태호

백승아 · 노종면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, 배우자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.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·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.

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,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·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. 최근 헌법재판소는 「민법」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,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

을 한 바 있음.

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여분을 상속 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,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15조의2(유류분 상실선고) ① 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의 상실을 선고할수 있다.
 - 1.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 - 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
 - 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
 - 2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)
 - 3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

대우를 한 경우

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,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,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118조의 제목 "(準用規定)"을 "(준용규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第1001條"를 "제1001조"로, "第1008條"를 "제1008조"로, "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"를 "제1008조의2, 제1010조는 유류분에"로, "準用한다"를 "준용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11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) 유류분 상실선고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u><신 설></u> | 제1115조의2(유류분 상실선고) ① 제1115조제1항에 의하여 유류 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 |
| | 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 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 |
| | 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 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. |
| |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가정 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|
| |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의 상실 을 선고할 수 있다. 1.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 |
| 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 대하게 위반한 경우 |
| | <u>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</u> <u>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</u> <u>양의무</u> |
| | 2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 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|

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 다)

- 3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 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・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 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우
-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분 상 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 의 경위와 정도, 상속인과 피상 속인의 관계, 상속재산의 규모 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.
- 第1118條(準用規定) 第1001條, 第 第1118條(준용규정) 제1001조, 제 1008條, 第1010條의 規定은 遺 留分에 이를 準用한다.
- 1008조, 제1008조의2, 제1010조 는 유류분에---준용한다.